

<p>推進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地方自治法 第68條第1項 및 서울特別市議會請願規程 第10條第1號에 依據 서울特別市長이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特別市長은 서울特別市文化財保護條例 第4條 및 同條例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會의 충분한 審議를 거쳐 處理하고 關係人에게 그 結果를 通知하시기 바랍니다. 상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으로 提案說明에 같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委員 여러분, 本委員이 提案하는 建議文을 滿場一致로 採擇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해서 梁元模委員이 發議하신 意見書 採擇案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. 委員 여러분의 異議가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 梁元模委員이 發議하신 意見書採擇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 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</p> <p>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 에 관한청원과 관련하여, 청원인이 주장하는 밥보시 할머니의 승고한 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높이 받들어 기리는 것은 마땅하나,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문헌등, 충분한 고증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다만, 구전으로 전래되는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문화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,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규정제10조 제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,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 시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,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3.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 止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p> <p>(14時 56分)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 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 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中等教育局長 權榮燦 서울市教育廳 中等教育 局長 權榮燦입니다.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 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 겠습니다.</p> <p>현행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 는 放送通信高等學校에 兼任되는 敎職員에게 支給되는 各種 兼任手當의 종류를 規定한 것 으로서 兼任手當은 公務員報酬規程 第32條 및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31條의 規定에 兼任機關의 長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教育 規則으로 정하는 것이 妥當하여 이 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 給條例를 廢止하는 그런 內容이 되겠습니다.</p> <p>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公務員報酬規程 第32條 및 地方公務員報酬規程 第31條에 根據 한 것입니다.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.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 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本 조례(안)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 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제안사유</p> <p>현행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교수당지급조 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겸임되는 교직원</p>
--	---

<p>에게 지급하는 각종 겸임수당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겸임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, 동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.</p> <p>4. 근 거 가. 지방자치법 제15조 나.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</p> <p>5. 검토의견 ○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1987. 9. 25 조례 제2215호로 제정되었고, 그 조례는 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제3조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, ○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 겸임수당에 의거 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임되는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상위 법령에 위임된 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혀, 규칙으로 제정, 단력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,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 ○ 다만, 조례폐지와 규칙제정 시기를 일치시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 마치고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는 먼저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</p>	<p>바랍니다.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2215호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4.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 (15時)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.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 廢止理由는 本 條例는 서울特別市 中·高等學校入學對象者 中 특출한 才質은 있으나 學費負擔이 어려운 者에게 獎學金을 支給하기 위하여 그 資格의 要件과 選定, 支給方法을 規定하는 것으로 公·私立 中·高等學校의 學生의 獎學金에 關한 事項은 獎學金施行規則 第</p>
--	---